



영국의 새로운 보험계약법

주요 내용

정인영 연구원

요약

■ 영국은 2016년 8월 12일 새로운 보험계약법인 Insurance Act 2015를 시행할 예정임. 본 법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계약체결 전 고지의무 관련 조문의 명확화, 워런티 위반 시 보험자 면책 제한, 사기적 보험금 청구에 대한 계약종료권 효력 발생 시점 명문화 등임. 본 법의 시행에 따라 영국 해상보험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내 해상보험계약 등에 변화가 예상됨.

■ 영국은 보험계약자 보호 및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계약법리 적용을 목적으로 새로운 보험계약법인 Insurance Act 2015를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을 제외하고 성문화된 보험법이 없는 상태에서 해상보험법은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됨.¹⁾
-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조정할 목적으로 소비자보험법(Consumer Insurance(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제정에 이어 보험계약법을 제정함.²⁾

■ 보험계약법의 주요 내용은 계약체결 전 고지의무 관련 조문의 명확화, 워런티 위반 시 보험자 면책 제한, 그리고 사기적 보험금 청구에 대한 계약종료권 효력 발생 시점 명문화 등임.

■ 계약체결 전 고지의무의 경우 기존의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에 따른 완전한 고지의무를 위험의 적절한 표시의무(The duty of fair presentation)로 대체하며 그 세부요건을 명문화함.

- 즉,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또는 알 것으로 추측되는 사실을 세분화함.

1) 실무에서는 판례 및 금융감독당국의 규칙 등을 통해 계약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함에 따라 해상보험법과 상충되는 측면이 존재하였음.
2) 소비자보험이란 개인의 거래, 영업, 전문직업과 무관하게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을 의미함. 2015년 보험계약법은 소비자보험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비소비자보험계약(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 및 소비자보험계약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보험계약법에서 고지의무, 워런티 관련 조항은 비소비자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해상보험법에 따르면 최대선의에 따라 모든 중요한 사실에 대한 완전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때 중요한 사실에 대한 판단이 보험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었음.
- 적절한 표시의무 위반 시에는 계약 체결시점에 해당 위험을 보험자가 미리 인지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인수 가능여부에 따라 다양한 구제수단³⁾을 마련함.
- 해상보험법에는 고지 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 취소권 외에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음.

■ 워런티(warranty)⁴⁾ 위반 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위반일로부터 장래에 대해 자동적으로 면책된다는 기존 법리를 폐지하고 위반일로부터 치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으로 변경됨.

- 이에 따라 워런티 위반 발생 이전 또는 위반이 치유된(remedied)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험금지급 의무가 있음.
- 워런티 위반과 보험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요건이 신설됨.
 - 기존 해상보험법에서 워런티는 중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위반할 경우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자는 면책되었음.
- 청약서상 진술을 워런티로 전환한다는 계약기초조항(the basis of the contract clause)을 삭제함.
 - 해상보험법에서는 계약기초조항에 따라 청약서상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그 중요성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자는 면책되었음.

■ 보험계약자의 사기적 보험금 청구(fraudulent claims) 시 보험자는 사기적 행위 발생 시점부터 계약을 종료(termination) 시킬 수 있다고 명문화함.

- 보험자는 통지를 통해 계약의 종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사기적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이며 그 이전에 발생한 적법한 사건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해상보험법에는 사기적 보험금 청구 관련하여 보험자 구제수단에 대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최대선의의무를 근거로 소급효를 인정해 계약을 처음부터 취소(avoiding)할 수 있었음.

■ 보험계약법 시행으로 해상보험법의 핵심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거법으로 하는 국내 해상보험계약 등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kiri](#)

3)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아도 됨. 그 외의 위반은 보험자가 해당 위험을 미리 알았을 경우를 가정 시 i) 인수하지 않았다면 취소가 가능하고, ii) (보험료 외에) 다른 계약조건을 추가하였다면, 해당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고, iii)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였다면 비례적으로 감액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4) 워런티란 보험계약자가 어떤 특정한 일이 행해지거나 행해지지 않을 것, 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이라고 약속하거나 특정한 사실 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의미함.